



이민/비자
이동찬 변호사

Q 이민 수속 과정서 유학생으로 신분변경

▶문= 현재 미국 E-2 사업체에서 요리사로 취업하고 있고 그 E-2 사업체가 아닌 다른 스폰서 회사를 통해 비수권공으로 I-140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. I-485 영주권 신청서는 문호가 밀려 제출하지 못했다. E-2 사업체는 곧 폐업할 예정이고 나는 유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학업을 진행하려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다.

▶답= 보통 E-2 비자는 미국 사업체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허용되는 비자이다. 그렇지만 E-2 사업체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E-2 사업체를

50% 이상 소유한 주인과 국적이 같고 E-2 사업체에서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E-2 종업원 비자 체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. 그러나 E-2 사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그 사업체의 50% 이상을 소유했던 주인이 영주권을 받는다면 그 E-2 신분은 소멸될 수 있다.

귀하는 E-2 신분이 소멸되기 전 다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. 다양한 형태의 비이민 비자가 있는데 비자마다 미국 거주 의도에 관한 조건이 다르다. 이민법 조항 214(b)에 의거하면 H-1B 취업비자 또는 L-1 주재원 비자는 미

국 거주 의도가 허용됨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도 H-1B 또는 L-1 비자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. E-2 비자는 해외 거주지가 없어도 되지만 E-2 신분이 만기 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.

반면 이민법 조항 101(a)(15)(F)에 의거하면 F-1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와 해외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. 2023년 12월에 수정된 이민국 지침서에 의하면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또는 I-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상태라도 유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미국을 떠난다는 의도를

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.

그리고 학업이 끝난 후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가 있고 지금은 해외 거주지가 없더라도 미국 입국 전 해외 거주지가 있었다면 해외 거주지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된다. 부모와 함께 살았던 해외 거주지라도 괜찮다.

결론적으로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되었다고 E-2 신분에서 F-1 유학생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은 가능하다. 반년 전부터 F-1 유학생 신분변경을 속성으로 신청할 수 있어 30일 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.

▶문의: (213)291-9980

Lic. #E49438
WWW.BLUEZONEINS.COM

푸른 신뢰를 드리는 **블루존보험**

생명보험 · 건강보험 · 사업체보험 · 자동차보험 · 주택보험 · 은퇴연금

- 메디케어
- 오바마케어
- 생명보험
- 사업체보험
- 자동차보험
- 주택보험

☎ 818.395.6999 ☎ 213.487.4848

BlueZone
INSURANCE SERVICES

우혜경

앞서가는
중앙일보 인터넷

www.koreadaily.com

The JoongAng
The Korea Daily

성인 & 소아교정

잇몸교정: 확실한 잇몸 교정은 입술과 양 볼 모양에 변화를 주어 얼굴 표정을 살아나게 합니다.

성형교정: 앞으로 나온 치아가 들어가면 얼굴이 이쁘게 됩니다

교정치과 특수 X-Ray 및 검사시설 완비

진료 비용은 분할제이며 보험도 적용됩니다.
Low Down Payment and Long Term Monthly Payment Available

www.smilekim.com

610 South Harvard Blvd. #101
Los Angeles, CA, 90005
Office: 213. 384. 6931

김흥일교정치과

치아교정 40년 경력의 신뢰

1980

여러 사례 및 풍부한 임상경험

꼼꼼한 사전 상담

세심한 사후 관리

멀리서 오시는분들과 시니어 특별우대

ASK미국 무료상담
ask.koreadaily.com

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
온라인 상담합니다!

ASK미국
The Korea Daily